

의안번호	2217702
의 퇴 인	백혜련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5.
추계번호	26C1634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8조 (경제·사회적 구조개혁시책추진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위기를 가져오는 경쟁압력·고용·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·사회적 구조 개혁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9조 (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세대의 자립과 사회진출 등 생애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0조 (포용적인가족 정책 수립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,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2조 (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4조 (안정적인 결혼· 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6	안 제16조 (고령사회 시책수립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인구의 규모 및 고령화 속도를 예측하여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,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9조 (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28조 (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소멸 대응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·농어촌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·교육·의료·주거 및 교통·문화 등 지역의 정주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호 간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9	안 제29조 (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)	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정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10	안 제40조 (전문 조사·연구 기관의 지정 등)	(제1항) 정부는 인구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 (제3항) 정부는 전문기관에 비용 지원 및 출연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44조 (지원) 제3항	정부는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에 포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 (경제·사회적 구조개혁 시책 추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9조 (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)	
3	안 제10조 (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)	
4	안 제12조 (일·가정 양립 환경 조성)	
5	안 제14조 (안정적인 결혼·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)	
6	안 제16조 (고령사회 시책 수립)	
7	안 제19조 (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제고)	
8	안 제28조 (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 소멸 대응)	
9	안 제29조 (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)	
10	안 제40조 (전문 조사·연구기관의 지정 등)	
11	안 제44조 (지원) 제3항	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명시된 정책의 범위를 인구 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는 내용

- 동 개정안의 조항 중 현행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은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이 유지될 수 있고, 일부 조항의 경우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여부 및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움
 - － 전부개정안의 조항 중 일부는 정책의 대상을 기존 ‘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’에서 ‘인구구조 변화 대응’으로 변경하고 있으나, 두 개념은 유사 개념이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여부 및 그 규모를 추계하기 어려움

[표 1] 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전부개정안의 유사·동일 조항

현행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	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」
제7조(인구정책)	안 제7조(인구구조 변화 대응 시책 수립·시행)
제7조의2(인구교육)	안 제30조(인구교육 활성화)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	안 제11조(자녀의 출산과 양질의 보육 지원)
제9조(모자보건의 증진 등)	안 제13조(모자보건의 증진)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	안 제15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
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	안 제18조(고령자 고용촉진과 노후소득보장)
제12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	안 제20조(건강증진과 의료제공)
제13조(생활환경과 안전보장)	안 제21조(노후 생활환경과 안전보장)
제14조(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	안 제22조(노후 여가·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)
제15조(평생교육과 정보화)	안 제23조(평생교육과 정보화 지원)
제15조의2(노후설계)	안 제24조(노후설계)
제16조(취약계층노인 등)	안 제25조(취약계층에 대한 배려)
제17조(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)	안 제17조(세대 간 통합 증진)
제18조(경제와 산업 등)	안 제26조(경제와 산업 등의 변화 부응)
제19조(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)	안 제27조(인구구조 변화 관련 신산업 육성)
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	안 제32조(인구전략 기본계획)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	안 제33조(연도별 시행계획)
제23조(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)	안 제36조(인구전략위원회)
제23조의2(위원회의 사무기구)	안 제37조(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)
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	안 제41조(전문인력의 양성)
제29조(조사 및 연구)	안 제39조(인구정책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)
제30조의2(인구의 날)	안 제42조(인구의 날)
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	안 제43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
제32조(지원)	안 제44조(지원)

- 안 제8조~제10조·제12조·제14조·제16조·제19조·제28조·제29조·제40조·제44조제3항의 경우 현행법에 유사 조항이 없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움
- (안 제8조~제10조·제12조·제14조)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압력·고용·주거불안 및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경제·사회적 구조 개혁을 시행하고, 청년, 다양한 가족, 결혼·출산을 위한 주거, 국내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그 규모를 알 수 없음
 - 현재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「청년정책 기본법」에 따라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및 안정적인 삶 영위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
 -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부부 가족,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, 한부모 가족, 입양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 - 현재 국토교통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결혼·출산을 위하여 임대주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
 - 현재 여성가족부는 국내 이주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 - (안 제16조·제19조) 현 시점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취할 조치의 내용을 예상하기 어려움
 - (안 제28조~제29조)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역소멸 및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여부 및 그 규모를 알 수 없음
 - 현재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(안 제40조) 개정안에 따라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·조정, 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·연구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지급하거나 출연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
- (안 제44조제3항) 개정안에 따라 인구정책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기관 및 단체,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포상의 대상자 수 및 방법 등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